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정 2018.10.23.

개정 2021.11.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규약 제37조제3항에 의한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규약에 의하여 실시하는 조합의 모든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권) 선거권은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규약 제7조1항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 그 권한이 있다.

제4조(피선거권) 피선거권은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으로 만1년 이상 계속하여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있다. 단 후원조합원은 규약 제7조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입후보형태) ①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선거에 있어 입후보 형태는 **위원장단독출마로 한다.**

②**위원장 궐위 시 보궐선거**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규정 제11조 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중 수석부위원장의 궐위 시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사무총장의 궐위 시 조합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대의원회에서 인준한다.

제2장 선거관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구성 및 자격제한)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선거에 입후보하는 자 및 운동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입후보자의 공고, 접수, 자격심사, 등록공고
2.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확인

3. 선거공보 발행
4.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
5. 투·개표의 관리
6. 선거록 작성 및 보고
7.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이에 대한 유권해석

제8조(의결정족수)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9조(재적조합원의 산정기준) 본 규정에 의한 재적조합원 산정은 명부작성일 현재 조합비를 1월 이상 계속 납부하면서 재직 중인 조합원으로 한다.

제10조(회의소집 및 후보자등록절차 공고)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 사무에 필요한 제반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마감 일시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련 제반공고 사항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및 군청 전자결재게시판에 게재한다.
 ③선거일은 선거 1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1조(선거일) ①위원장 선거는 현 위원장의 임기만료 30일전에 실시한다.
 ② 위원장의 보궐선거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180일 미만일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2절 입후보

제12조(입후보 자격) 선거 입후보는 등록일 현재 만1년 이상 계속하여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제13조(입후보 등록) ①위원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후보등록신청서 각 1부
2. 조합원증명서 각 1부

3. 위원장 입후보 취지 및 공약사항 각 1부.
4. 입후보자 서약서 각 1부.
5. 후보자 이력서 각 1부.
6. 입후보자 추천서 각 1부.

② 입후보자가 임원 및 운영위원인 경우에는 입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자격이 정지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등록서류가 접수 즉시 심사를 실시하고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입후보자는 등록마감일까지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여 한다.

제14조(추천인) 위원장으로 입후보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조합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중복추천은 무효로 한다.

제15조(재등록 공고) 위원장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자격심사)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제17조(입후보자의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자격심사를 거쳐 즉시 입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하며, 자격상실, 사퇴 등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3절 선거운동

제18조(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 집행을 위해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 할 수 있다.

제19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자 등록 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9조의1(선거운동 제한) 후보자와 그 운동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폭력, 공갈, 납치
2. 중상모략, 인신공격, 흑색선전
3. 금품수수, 향응제공
4. 선거관리 방해
5. 기타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제한하는 행위

제19조의2 (합동연설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시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홈페이지나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연설문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②합동연설회는 후보자 등록마감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행하되, 각 후보의 연설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절 선거인명부

제20조(선거인명부)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인 명부를 작성하고 열람 공고하여야 한다.

②명부기재 상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7일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③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명부 교부신청 시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명부등록 요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는 자는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비를 1월 이상 납부 하면서 재직 중인 조합원으로 한다.

제5절 투표와 개표

제22조(투표방법 및 투표소) ①투표방법은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서면투표 또는 개인용 휴대전화와 노동조합 홈페이지등을 통한 전자투표로 할 수 있다.

②전자투표의 경우 제23조와 제24조 등 서면 투표에 갈음하는 절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 동 조항을 따른 것으로 본다.

③서면 투표 시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로 하되 투표율 제고를 위하여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은 순회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투표용지)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②투표용지의 후보자 기호는 추첨을 통해 정한다.

③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날인한다.

④전자투표로 투표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용지에 날인한 것으로 갈음 한다.

제24조(투표용지 교부) 투표용지의 교부는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인명부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날인을 받아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참관인) ①선거관리위원장은 각 후보자의 지명한 2명 이내의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 과정을 참관하도록 한다.

②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 위원에게 이의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한 후 투표 및 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6조(개표) 개표는 선거관리위원 및 개표종사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종료 선언과 개표선언과 함께 개표한다.

제27조(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표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하여 확인이 불분명하게 기표된 투표지
3. 이중으로 기표된 것
4. 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것
5. 백지 투표지
6. 선거관리위원장의 사인이 날인되지 않은 투표지
7.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한 경우
8.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제28조(개표록)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선거결과를 공포하는 동시에 개표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개표록에는 총유권자수, 투표인수, 기권자수, 후보자별 득표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의 진행사항 및 특이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개표록에는 선거관리위원 3분의 2이상이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당선결정) ①위원장의 선거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조합원 과반수이상 투표참석과 투표참석자의 과반수이상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②단독 입후보한 경우에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투표조합원 과반수이상 찬성득표로 당선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 결과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 순으로 2인을 선정하고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제30조(당선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완료 즉시 당선요건 확인 후 당선증을 교부하고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재선거)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2.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가 된 때

②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를 확정하였을 경우 30일 이내 재선거를 실시하

여야 한다.

제6절 이의신청

제32조(이의제기)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이 이의가 있을때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검토, 처리한 후 이의 신청자에게 7일 이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부정선거 처리)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규약 및 본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에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회의결과 부정선거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결의를 하고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제34조(입후보자 자격상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명백한 부정선거로 인하여 당선무효가 된 자는 차기 선거의 입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

제35조(징계) 선거관리위원 또는 선거관계자가 고의로 부정한 선거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입후보자간 이행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기록보관) 선거에 관한 모든 문서와 기록은 선거관리위원장의 확인 하에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에 인계하여 보관한다.

제4조(초대위원장 선거) 초대위원장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 선거관리규칙을 따른다.

[별지 제1-1호 서식]

위원장 입후보 취지 및 공약사항

제 대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후보자 등록에 따른 입후보 취지 및 공약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 음 -

소 속	직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비 고
위원장 입후보 취지내용 (요 약)					
공 약 사 항 (요 약)					

년 월 일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입후보자 서약서

1. 우리는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선거 후보자로서 노동운동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및 정책대결의 장이 되어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의 위상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2. 우리는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및 선관위 결정사항을 엄수하여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일체의 부정선거운동을 하지 않으며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을 실천한다.
3. 우리는 선거관리규정 및 선관위에서 정한 아래의 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후보자격 박탈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한다.

- 아 래 -

- 1) 선거홍보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상대후보를 중상 모략하는 행위
- 2) 후보 개인 홈페이지·트위터·카페 등에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타인에 의해 게시된 글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
-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 4)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년 월 일

위 원 장 후보

인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조 합 원 증 명 서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규약 제7조 및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3조에 의하여 다음의 자를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임을 증명합니다.

구 분	대 상 자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소속및직급		
가입년월일		

년 월 일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인)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입 후 보 추 천 서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자를 제 대 예천군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 다 음 -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소 속	비 고
위 원 장					

추 천 자 명 단

번호	소속	생년월일	성명	서명	번호	소속	생년월일	성명	서명

년 월 일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